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11,876,215 | 12,356,286 |
| 일반회계 | 405,476,842 | 12,164,305 |
| 특별회계 | 6,399,373 | 191,981 |
| 기타특별회계 | 6,399,373 | 191,981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14,000 | 420 |
|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| 553,733 | 16,612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,358,640 | 40,759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1,040,000 | 31,200 |
| 주차장특별회계 | 3,433,000 | 102,99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채무부담행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"계속비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"명시이월사업"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88,20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조직변경 조례(안)이 동일 회기내에서 동시에 의결되었을 경우 조직개편에 맞게 예산서를 개편 운용

※ 의존재원 표시

국비→국, 균형발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특별조정교부금→특